##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21조제1항 관련)

## 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  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- 3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
  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91조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  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 정되는 경우
  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 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 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	
가. 건설기술인이 법 제20조제2항	법	50만원	50만원	50만원	
전단에 따른 교육·훈련을 정당	제91조제3항				
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	제1호				
나. 사용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	법	50만원	50만원	50만원	
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	제91조제3항				
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	제2호				
불이익을 준 경우					

	,			
다.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를 제출한 경우		150만원	225만원	300만원
라.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 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 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	제91조제2항	300만원	500만원	1,000만원
마. 건설기술인이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 하지 않은 경우	, .	50만원	50만원	50만원
바.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	, ,			
<ol> <li>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미 만인 경우</li> </ol>		10만원	10만원	10만원
<ul><li>2)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이</li><li>상 3개월 미만인 경우</li></ul>		30만원	30만원	30만원
3)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3개월 이 상이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		50만원	50만원	50만원
4) 변경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		200만원	200만원	200만원
사.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 우	법 제91조제3항 제6호	100만원	100 H   0]	100 H   ♦]
1)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		100만원	100만원	100만원
<ul><li>2)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</li><li>개월 미만인 경우</li></ul>		200만원	200만원	200만원
3)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 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	300만원	300만원	300만원
아.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지 않 은 경우 1) 시고 지여기가이 1개원 미마이	법 제91조제3항 제7호	100만 회	100마회	100만 회
1)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		100만원	100만원	100만원

<ul><li>2)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</li><li>개월 미만인 경우</li></ul>		200만원	200만원	200만원
3)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 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	300만원	300만원	300만원
자. 법 제31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 간에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 한 경우(법 제33조에 따라 건설기 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 외한다)	제91조제3항 제8호	300만원	300만원	300만원
차.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 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 설기술용역을 수주한 경우	법 제91조제3항 제9호			
1) 수주 건수가 1건인 경우		50만원	50만원	50만원
2) 수주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		100만원	100만원	100만원
<ul><li>카.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</li></ul>	, , _	300만원	300만원	300만원
타.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	제91조제3항	100만원	150만원	200만원
파.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 은 경우	, .	1,000만원	1,500만원	2,000만원
하. 법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 공사를 진행하게 한 경우	, ,	1,000만원	1,500만원	2,000만원
거.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91조제2항 제1호의2	500만원	750만원	1,000만원
너.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 과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, ,	150만원	225만원	300만원

더.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 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 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 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경우	제91조제2항	250만원	375만원	500만원
러.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 리계획의 승인 없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했음 을 알고도 발주자가 묵인한 경우	제91조제3항	150만원	225만원	300만원
머. 법 제62조제3항·제5항 및 제8 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제91조제3항	150만원	225만원	300만원
버.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 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				
1)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		500만원	500만원	500만원
<ul><li>2)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</li><li>개월 미만인 경우</li></ul>		750만원	750만원	750만원
3) 제출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 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		1,000만원	1,000만원	1,000만원
4)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		1,000만원	1,000만원	1,000만원
서. 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 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・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91조제2항 제3호의2	500만원	750만원	1,000만원
어.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	법 제91조제2항 제3호의3	500만원	750만원	1,000만원
저.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91조제3항 제15호	150만원	250만원	300만원
처.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 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 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	, ,	250만원	375만원	500만원

커.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	법	250만원	375만원	500만원
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	제91조제2항			
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	제5호			
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경우				
터. 건설공사 참여자(발주자는 제외	법	200만원	250만원	300만원
한다)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	제91조제3항			
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	제16호			
인ㆍ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				
수				
퍼.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	법	1,000만원	1,500만원	2,000만원
이행하지 않은 경우	제91조제1항			
	제3호			